문서번호	유통물류팀-1030
보존기간	년
결재일자	2017.07.10
공개여부	공개

★담당자	팀장	유통본부장
조성진	윤덕인	07/10 김성수
협 조	팀장	나선중
감 사		

총각무 포장화 및 하차거래 관련 산지 출장 계획

2017. 7.

서울특별시농수산식품공사

유통물류팀

총각무 포장화 및 하차거래 관련 출장 계획

○ 고랭지 총각무 포장화 및 팰릿타이징 여건 조사 및 출하자 의견 청취
○ 팰릿 출하 및 하차거래 실시에 따른 물류비용 파악 및 해결방안 모색

Ⅰ 출장 개요

□ 일 시 : 2017. 7. 10(월) ~ 7. 11(화) (1박 2일)
□ 장 소 : 강원 평창 지역 총각무 출하지
□ 출장자 : 총 3명(유통물류팀 윤덕인, 양성재, 조성진)

Ⅱ 출장 세부 계획

□ 주요 방문처 : 강원 평창 지역 총각무 수확 작업 현장

일자	장소	출하자	연락처
7.10(월)	강원도 평창군 진부면	***	***-****-****
		***	***-****-****
7.11(화)	강원도 평창군 진부면	***	***-****-****
		***	***-****-****

※ 현재 강원 지역 작업 실시하며 거래 금액이 상대적으로 큰 출하자를 대상으로 조사 및 면담 실시(대아청과 및 직접거래 중도매인 동시 출하)

□ 출장 내용

○ 가락시장 물류개선 계획 공유 및 포장화·하차 거래 필요성 설명
○ 총각무 포장화 및 하차 거래를 위한 산지 여건 조사 및 의견 청취

Ⅲ 예산 사항

□ 소요 예산

○ 금　　액 : 금 삼십구만원정(₩390,000)

○ 예산 과목 : 영업비용 / 도매시장관리원가 / 여비

○ 예산 내역 : 산지및도매시장출장

(단위 : 천원)

예산액	배정액	기집행액	금회집행액	배정잔액	예산잔액
38,147	29,517	21,164	390	29,127	37,757

○ 산출 내역

구 분	금 액	산 출 내 역
일 비	120,000원	20,000원×3명×2일
식 비	120,000원	20,000원×3명×2일
숙박료	150,000원	50,000원×3명×1일
교통비(통행료)	사후 정산	사후 정산
계	**390,000원**	

※ 산출근거 : 공사 여비규정

※ 교 통 비 : 공사 업무용 차량 이용(주유비, 통행료 발생 시 사후 정산)

붙 임 : 1. 출장명령서 1부.

2. 출장비 산출 내역 1부.

3. 여비 지급 구분표 및 국내여비 지급표 1부. 끝.

(붙 임 1)

출 장 명 령 서

결재	주무팀	담 당	팀 장	본부장	사 장
	협 조	총 무 팀 장			

○ 다음과 같이 출장을 명함

출 장 자	유통물류팀 윤덕인, 양성재, 조성진
출장 목적	총각무 포장화 및 하차거래 추진 관련 산지 출장
출장 기간	2017. 7. 10(월) ~ 7. 11(화)(1박 2일)
출장 지역	강원 평창
이동 사항	서울 ⇒ 평창 ⇒ 서울
여 비	총 390,000원

(붙 임 2)

출장비 산출 내역

□ 출장 지역 : 강원 평창

□ 출장 기간 : 2017. 7. 10(월) ~ 7. 11(화)(1박 2일)

□ 출 장 자 : 유통물류팀 윤덕인, 양성재, 조성진

□ 출장비 산출 내역

구 분	금 액	산 출 내 역
일 비	120,000원	20,000원×3명×2일
식 비	120,000원	20,000원×3명×2일
숙박료	150,000원	50,000원×3명×1일
교통비(통행료)	-	-
계	**390,000원**	

※ 산출근거 : 공사 여비규정

(붙 임 3)

[별표 1] <개정 2015.1.6.>

여비 지급 구분표(제3조 관련)

구 분	해 당 공 무 원
제1호	가. 대통령, 국무총리, 부총리, 감사원장, 국무위원, 검찰총장, 「공무원보수규정」 별표 12의 비고 제1호다목을 적용받는 총장), 대장, 그 밖에 국무위원 상당 보수를 받는 공무원
	나. 인사혁신처장, 법제처장, 국가보훈처장, 식품의약품안전처장, 차관
	다. 14등급부터 12등급까지의 직위에 임용된 외무공무원, 대검찰청 검사급 이상의 검사(검찰총장은 제외한다) 및 10호봉 이상의 검사, 10호봉 이상의 헌법연구관, 치안총감·치안정감, 소방총감·소방정감, 「공무원보수규정」 별표 12의 비고 제1호가목 및 나목을 적용받는 총장, 대학교의 부총장, 대학원장, 대학교의 학장·처장·기획연구실장·교양과정부장, 한국교원대학교 교수부장, 한국예술종합학교 원장·처장, 중장·소장·준장, 고위(감사)공무원단 가등급 직위에 임용된 공무원, 1급 공무원, 차관 또는 1급 상당 보수를 받는 공무원, 「공무원보수규정」 별표 33 제3호가목의 연봉등급 1호에 해당하는 일반임기제공무원, 「공무원임용령」 별표 4의2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임용등급 가급에 해당하는 전문임기제공무원(실장급 직위에 임용된 사람만 해당한다)
	라. 11등급부터 9등급까지(국장급만 해당한다)의 직위에 임용된 외무공무원, 9호봉 이하의 검사, 9호봉 이하의 헌법연구관, 헌법연구관보, 치안감·경무관, 소방감·소방준감, 대학 및 전문대학의 교수·부교수, 교육부 본부 장학관 및 교육연구관, 「지방교육행정기관의 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2조제2호에 따른 시·도 교육청의 국장인 장학관 및 같은 조 제4호에 따른 교육지원청의 교육장, 초·중·고등학교의 교장, 대령·중령, 고위(감사)공무원단 나등급 직위에 임용된 공무원, 2급 및 3급(국장급만 해당한다) 공무원, 2급 및 3급(국장급만 해당한다) 공무원에 상당하는 보수를 받는 공무원, 「공무원보수규정」 별표 33 제3호가목의 연봉등급 2호 및 3호에 해당하는 일반임기제공무원, 「공무원임용령」 별표 4의2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임용등급 가급에 해당하는 전문임기제공무원(국장급 직위에 임용된 사람만 해당한다)
제2호	가. 9등급(위 제1호에 해당하는 사람은 제외한다)부터 5등급까지의 직위에 임용된 외무공무원, 총경·경정, 소방정·소방령, 대학 및 전문대학의 조교수, 제1호 외의 장학관 또는 교육연구관, 초·중·고등학교의 교감, 14

		호봉 이상의 장학사·교육연구사 및 각급학교 교사, 소령·대위·중위·소위·준위, 3급(과장급만 해당한다)부터 5급까지의 공무원(「공무원임용령」 제3조의3에 따른 시간선택제채용공무원 및 같은 영 제57조의3에 따른 시간선택제전환공무원을 포함한다), 3급(과장급만 해당한다)부터 5급까지의 공무원에 상당하는 보수를 받는 공무원, 「공무원보수규정」 별표 33 제3호가목의 연봉등급 4호 및 5호에 해당하는 일반임기제공무원(「공무원임용령」 제3조의2제3호에 따른 시간선택제일반임기제공무원을 포함한다), 「공무원임용령」 별표 4의2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임용등급 가급 및 나급에 해당하는 전문임기제공무원(「공무원임용령」 제3조의2제3호에 따른 시간선택제전문임기제공무원을 포함하되, 이 표 제1호에 해당하는 공무원은 제외한다) 및 한시임기제공무원(「공무원보수규정」 별표 30의2에 따른 5호 등급이 적용되는 공무원만 해당한다), 「연구직 및 지도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규정」(이하 이 표에서 "임용규정"이라 한다) 별표 2 제1호다목 및 라목, 제2호나목 및 다목과 제3호의 연구관, 임용규정 별표 2의2 제1호나목 및 다목, 제2호나목 및 다목과 제3호의 지도관, 국가정보원 전문관, 「전문경력관 규정」 제5조제1항에 따른 전문경력관 가군
		나. 위 제1호 및 제2호가목에 해당하지 않는 공무원(「공무원보수규정」을 적용받는 공무원을 포함한다)

[별표 2] <개정 2015.1.6.>

국내 여비 지급표(제10조부터 제13조까지 및 제16조제1항 관련)

(단위: 원)

구 분	철도운임	선박운임	항공운임	자동차 운임	일 비 (1일당)	숙박비 (1박당)	식 비 (1일당)
제1호	실비 (특실)	실비 (1등급)	실비	실비	20,000	실비	25,000
제2호	실비 (일반실)	실비 (2등급)	실비	실비	20,000	실비 (상한액: 서울특별시 70,000, 광역시 60,000, 그 밖의 지역은 50,000)	20,000

비고: 1. 위 표의 제1호란에도 불구하고 별표 1의 제1호가목 중 대통령과 국무총리의 일비와 식비는 실비로 한다.

1의2. 공적 항공마일리지를 사용하여 항공운임을 절약한 공무원에 대해서는 일비의 50퍼센트를 추가로 지급하되, 추가로 지급되는 일비 총액은 공적 항공마일리지 사용으로 절약된 항공운임의 범위에서 인사혁신처장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2. 항공운임이 2개 이상의 등급으로 구분되어 있는 경우에는 별표 3 비고에 따라 기획재정부장관이 인사혁신처장과 협의하여 정하는 기준에 따른다.

3. 버스운임은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가 정하는 기준 및 요율의 범위에서 정해진 버스요금을 기준으로 한다.

4. 자가용 승용차를 이용하여 공무로 여행하는 경우의 운임은 표의 제1호란 및 제2호란에 따른 철도운임 또는 버스운임으로 한다. 다만, 공무의 형편상 부득이한 사유로 자가용 승용차를 이용한 경우에는 연료비 및 통행료 등을 지급할 수 있고 구체적인 지급 기준은 인사혁신처장이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하여 정한다.

5. 운임 및 숙박비의 할인이 가능한 경우에는 할인된 요금을 지급한다.